

	대학선거관리시행세칙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1986. 10. 1.
		최종개정일자	2016. 11. 11.
		담당부서	교무입학처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 총학생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총학생회 대표를 선출하고, 총학생회의 자치활동을 신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선거인)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재학생으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선거권) 본 회의 회원은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. 단, 휴학, 제적, 정학 상태에 있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.

제4조(피선거권) 총학생회 회칙 제42조(피선거권)에 규정된 자로 직전 학기 평균 평점 3.0 이상인 자로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<개정 2014.3.5>

제2장 선거관리위원회

제5조(구성) ①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 실시 15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②선거관리위원회(이하 "선관위" 라 한다)는 운영위원 추천 3명, 학생회 추천 3명, 지도위원 1명, 일반학생 5명으로 구성하며, 선관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(단, 지도위원 1명은 선거진행의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, 의결권은 없다)

③선관위 위원은 피선거권이 없으며, 피선거권을 갖고자 하는 자는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.

④입후보자 등록 학과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을 선발할 수 없다.

제6조(구성시기) 선관위는 선거 예정일 15일 전에 구성하여야 한다.

제7조(업무 및 진한) 선관위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
- ①입후보자의 자격 심사
- ②선거인 명부 작성
- ③선거 공보의 부착
- ④선거운동의 방법과 일시 조정
- ⑤선거 및 당선 무효여부 심사
- ⑥당선인의 당선공고
- ⑦재선거 결정여부
- ⑧부정선거운동 입후보자 등록 취소 결정

- ⑨경고처분 3회시 후보자 자격 박탈 결정
- ⑩기타 선관위의 업무나 권한에 관한 제반사항
- ⑪선거 투·개표장의 질서유지 및 감독
- ⑫투표용지 및 투표함 제작
- ⑬투표소 설치 및 관리
- ⑭선거기간 중 유권자들이 알아야 될 각종 선거 관련 사항을 홍보 및 선전한다.
 - 1. 각 후보 포스터와 선거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부착
 - 2. 선거일정 현수막 제작 및 부착
 - 3. 투표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안내
 - 4. 기타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홍보 및 선전
- ⑮시행세칙을 구체적인 부분에서 보완한다.
- ⑯분쟁이 생길 경우 중재 및 조정권을 가지며, 선거시행세칙에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다

제8조(해임) ①선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.

- 1. 선관위원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
- 2. 본 회의 회원 자격이 없음이 발견되었을 때
- 3. 선관위원으로서의 품위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
- ②선관위원의 해임에 대한 권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.

제9조(선거일 공고) 선거일은 학교와 협의하여 위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개회 및 의결) 선관위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제7조 ⑤항, ⑧항, ⑨항의 경우는 재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.

제11조(임기) 선관위의 임기는 구성한 날로부터 선거 관련 제반 업무 종료 시까지로 하며, 선관위원장이 그 해산을 선언한다.

제12조(선거인명부 작성) 선거 실시 3일 전에 자격 심사에 통과한 자에 한해서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.

제13조(선거인명부 열람) 본 회 회원은 누구나 선거인명부에 이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열람 기간 내에 문서로써 선관위원장에게 이의서를 제출하고,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3장 입후보 및 등록

제14조(등록절차) 회장, 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입후보 등록기간 중에 선관위에서 지정한 소정양식과 다음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. 반드시 후보자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.

- 1. 입후보 등록신청서(소정양식)
- 2. 입후보자 서약서(소정양식)

3. 지도교수 및 학과장 추천서(소정양식)
4. 사진 3매(8 " x 10")
5. 참관인 등록신청서(소정양식)
6. 전체학기 성적증명서 1통
7. 재학증명서 1통

제15조(후보자등록) ①런닝메이트제로 회장 1명, 부회장 1명이 1개조로 동시에 등록 한다.<개정 2016.11.11>

②런닝메이트제 구성원 중 1인이라도 후보 결격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후보자전원의 자격을 박탈한다.

③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에게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,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사퇴할 수 없다.

제4장 선거운동

제16조(운동기간) 선거운동은 입후보 등록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선거일 전까지 할 수 있다.

제17조(선거운동범위) 선거운동은 본 세칙 제19조, 제20조 규정에 의하며 교내에서만 허용한다.

제18조(선거공보발행) ①후보자의 기호, 사진, 성명, 연령, 학과, 출신고 및 입후보 취지를 게재한 선거공보를 1회 발행한다.

②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(명함판)을 선관위에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선거공보 발행은 선관위에서 주관한다.

제19조(선전벽보, 현수막 및 홍보지) 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 및 현수막의 내용, 규격, 부수 및 게시장소는 선관위에서 정하며 홍보지의 횡수는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.

②선거 선전 현수막은 3개 이내, 선거선전 홍보지의 발행 횡수는 3회를 넘지 못한다.

③후보자는 선전벽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0조(선거홍보물) 선관위에서 제작 제공한 홍보물 이외의 선거 홍보물은 아래의 원칙에 준하여 제작하고 게시한다.

①인쇄물 : 1종(색도는 무관함)

②자체홍보물

1. 전단용(배포용)

크기로는 A4용지로 제한하며 발행횟수는 10종으로 한정한다. (단, 선관위에 신고 득한 후 배포한다.)

2. 게시용

크기는 전지 2장까지이며 게시횟수는 20호로 제한 한다. (선관위 신고 득한 후 게시한다.) 단, 2팀 초과 시 전지 1장으로 한다.

- ③이동게시판 : 1개로서 크기는 가로 3M, 세로는 지상으로부터 2M,(사용일은 선거일로 제한한다.)
- ④현수막 : 후보당 8개이며, 폭은 120cm, 길이 8M로 제한한다. (후보들은 다른 내용의 프랑으로 상시교체 할 수 있되, 그 종수가 8개를 초과하지 못하며, 선관위에 신고 득한 후 설치한다.)
- ⑤깃발 : 개수는 30개 이내이며, 크기는 가로 1M, 세로 1M,(사용일은 합동연설회때만 사용가능 한다.)

제5장 투 표

제21조(투표방법) ①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기표식으로 한다.

②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.

제22조(투표소 설치) ①선관위는 투표시작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되, 선거일 1일 전까지 투표장소를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②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, 기표소 안에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된다.

제23조(투표시간) ①투표시간은 주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되 선관위와 후보자의 합의 하에 조정 가능하다.

②위원장은 투표를 마감할 때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권자에게는 투표하게 하여야 한다.

③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선관위원은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하며, 이때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..

제24조(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) ①투표함과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선거일 전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.

②투표용지에는 기호, 한글로 기재된 성명란을 인쇄하고, 일련번호 및 선관위의 철인을 날인하여야 한다.

제25조(투표) ①선거인은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학생증,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검인된 증명서에 한한다)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.

②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와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.

③선거인의 잘못으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때라도 재교부할 수 없다.

④동일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.

⑤위원장은 투표가 완료된 즉시 투표소의 출입구를 폐쇄하고,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참여인원 전원으로 하여금 투표함을 봉쇄, 봉인토록 하고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.

제26조(투표참관) ①선관위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.

②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투표참관인을 1인 선정하여 후보자 등록시 그 명단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선거권이 없거나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자,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후보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.

④투표참관인 투표 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⑤투표참관인은 투표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선관위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.

⑥선관위는 ④항의 규정을 위반한 참관인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제27조(투표소의 출입제한) ①투표자, 선관위원 및 투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는 들어 갈 수 없다.

②선관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선관위가 교부하는 기장을 패용하여야 한다.

제6장 개 표

제28조(개표) ①선관위는 선거일 3일 전까지 개표장소를 결정하여 투표장소와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.

②개표사무는 선관위가 행한다.

③개표는 투표함이 도착된 후에 실시하며,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개함을 선언하고,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과 함께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.

④선관위원장은 개함한 후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대조 결과,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⑤선관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개표 집계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제29조(개표참관) ①선관위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.

②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개표참관인을 1인 선정하여 후보자 등록 시 그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선거권이 없거나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자,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후보자는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.

④개표참관인은 개표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선관위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.

제30조(무효투표)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.

1.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
2. 어느 후보자의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
3. 2개 이상의 후보자의 란에 기표를 한 것
4. 어느 후보자의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

5. 기표봉을 사용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
 6. 기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
 7. 선거인 자신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
 8. 기타 선관위가 제시한 기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기표한 것
- ② 유.무효의 판정은 선관위원장이 한다.

제7장 당선공고 및 이의제기

제31조(당선인 결정) ①당선은 유효투표 중 최다 득표자로 하며 개표 완료 후 12시간 이내에 당선공고를 한다.

②단일 입후보의 경우에는 신임 투표로 선거권자 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투표로 당선이 결정된다.

제32조(당선공고)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인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당선인에게 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33조(당선 이의 제기) ①당선에 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공고 후 24시간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.

②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의 제기가 인정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인원 3/4의 찬성으로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되 결정서에는 반드시 소수의 의견도 기재하여야 한다.

제8장 재선거

제34조(재선거) 다음 사항에 해당하였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.

- ①동점 투표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점 득표자끼리 재선거
- ②당선인이 없을 때
- ③선거가 전부 무효일 경우
- ④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임 또는 피선거권이 상실될 때

제35조(실시) 재선거는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.

제9장 보궐선거

제36조(보궐선거) 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와 잔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

제10장 금지규정 및 징계

제37조(금지규정)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, 선거운동원, 선거권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
- ① 후보자에 대한 비방, 중상모략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
- ② 폭력, 협박, 납치 등의 방법으로 선거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
- ③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
- ④ 선거와 관련하여 향응, 음식물 제공, 물품(볼펜, 성냥, 모자, बै지 등)을 배포하는 행위
- ⑤ 합동연설회장에서 폭력, 협박,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설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
- ⑥ 학내를 벗어난 외부 지역의 선거운동은 일체 금한다.
- ⑦ 공적인 일 이외의 선거관리위원회실 출입을 금한다.
- ⑧ 선거에 관련된 낙서를 하는 행위
- ⑨ 기타 본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나 선관위에서 금지규정으로 결정된 사항

제38조(징계) ① 선관위는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그 경중에 따라 경고처분을 내린다.

- ② 경고처분 3회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.
-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경고 처분 및 박탈에 관한 선관위의 결정 사항을 해당 후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및 공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1. 본 규정은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공직자 선거법 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- 1. 본 규정은 200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본 선거시행세칙은 2004년 5월 30일 부터 시행한다.
- 2. (유권해석) 본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본 선거시행세칙은 2014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본 선거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선거시행세칙은 2016년 11월 11일 부터 시행한다.